

# 1. 계약 규정 신규대비표

현행 규정	개정안	수정 이유
<p>제2조(적용범위) ①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또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② 절차와 업무처리기준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구매담당 처장이 대학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, <b>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b></p>	<p>제2조(적용범위) ①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또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② <b>제1조에서 정한 계약업무는 구매부서에서 담당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담당 할 수 있다.</b></p> <p><b>1. 소액구매특례규정에 의한 소액구매</b></p> <p><b>2. 서류류(전자자료 포함)</b></p> <p><b>3. 2천 2백만원이하의 연수 및 교육을 목적으로한 용역계약</b></p> <p><b>4. 대학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한 구매</b></p> <p>③ <b>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업무와 관련된 절차 및 업무처리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구매담당 처장이 대학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</b></p>	<p><b>계약업무 담당 세부기준 명시 (업무효율화를 위해 각부서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 경우 명시)</b></p> <p>계약업무 관련 세부지침 등은 행정처에서 수립</p>
<p>2장 구매방법결정</p>	<p>2장 <b>계약</b>방법 결정</p>	<p>용어 통일</p>
<p>제6조(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의 적용배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 참가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서류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정부, 관공서, 정부투자기관, 지방자치단체, 학교법인, 공익법인, 포스코, (주)포스코가 출자한 법인 및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,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이 출자한 법인 등과 계약을 할 때</p>	<p>제6조(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의 적용배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계약 참가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서류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정부, 관공서, 정부투자기관, 지방자치단체, 학교법인, 공익법인, <b>(주)포스코, (주)포스코</b>가 출자한 법인 및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,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이 출자한 법인 등과 계약을 할 때</p>	<p>오타 수정</p>
<p>제7조(제한경쟁의 기준) ① <u>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	<p>제7조(제한경쟁의 기준) ① <b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다.</b></p>	<p>문구형식 통일</p>
<p>제9조(지명경쟁계약의 지명기준) 지명경쟁계약에 참가할 자</p>	<p>제9조(지명경쟁계약의 지명기준) 지명경쟁계약에 참가할 자를</p>	

<p>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하여 그 지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	<p>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<b>호의</b> 기준에 의하여 그 지명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유지)</p>	<p>오타수정</p>
<p>제10조(수의계약 집행기준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<u>의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인의 용역.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, 구조,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경우</p> <p>가. 공사</p> <p>(1)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</p> <p>(2)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</p> <p>(3)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(4)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</p> <p>(5) 마감공사에 있어서 전차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.</p> <p><u>(6) 당해 물품을 제조,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</u></p> <p><u>(7)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을 주된 영업 소재지로 하는 업체와 공사계약 하는 경우</u></p> <p>나. 물품의 제조 및 구입</p> <p>(1) 특허품, 실용신안등록품 또는 의장등록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매입하는 경우</p> <p><u>(2)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</u></p> <p>(3)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의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</p>	<p>제10조(수의계약의 기준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<b>부칠 수 있다.</b></p> <p>1.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인의 용역.설비 또는 특정한 위치, 구조,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경우</p> <p>가. 공사</p> <p>(1)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</p> <p>(2)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</p> <p>(3)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</p> <p>(4)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</p> <p>(5) 마감공사에 있어서 전차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.</p> <p><b>(6) (이전: 나목으로 이동)</b></p> <p><b>(7) (삭제)</b></p> <p>나. 물품의 제조 및 구입</p> <p>(1) 특허품, 실용신안등록품 또는 <b>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</b></p> <p><b>(2)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</b></p> <p>(3)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물품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의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</p>	<p>용어 수정</p> <p>-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국가계약법시행령 반영 (수의계약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삭제 및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·정정)</p> <p>- 제1호 가목의 (6): 공사가 아닌 물품의 제조 및 구입에 관한 항목 제1호 나목의 (4)로 이전</p>

<p>(4) <u>대리점 위임계약상 경쟁견적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</u></p> <p>다. 용역, 기타</p> <p>(1) 학술연구.설계.감리.조사.측량.시운전.검정.훈련.시설관리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</p> <p>(2) 토지.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</p> <p>2. 천재지변, 돌발사고 복구,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지가 없을 때</p> <p>3. 설계금액이 1억원(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, 전기공사.정보통신공사.소방공사의 경우 5천만원) 이하인 공사</p> <p>4. <u>물품의 제조, 구매, 용역, 기타 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(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)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(외자의 경우 US\$30,000)</u></p> <p>5. ~ 13. (생략)</p> <p>14. <u>제1호 내지 제12호</u> 이외에 계약의 목적,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 할 때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(삭제)</b></p> <p><u>(4) 해당 물품을 제조·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·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(이전: 가목 (6) 이동)</u></p> <p><u>(5) 이미 구매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·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·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(신설)</u></p> <p>다. 용역, 기타</p> <p>(1) 학술연구.설계.감리.조사.측량.시운전.검정.훈련.시설관리 등 특정인의 <b>기술.품질이나 경험.자격을</b> 요하는 용역의 경우</p> <p>(2) 토지.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</p> <p>2. 천재지변, 돌발사고 복구, 긴급한 행사,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지가 없을 때</p> <p>3. 설계금액이 1억원(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, 전기공사.정보통신공사.소방공사의 경우 5천만원) 이하인 공사</p> <p><b>4. 예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(외자의 경우 US\$20,000)</b></p> <p><b>5. 예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(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다)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·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(신설)</b></p> <p><b>6. ~ 14. (현행유지)</b></p> <p><b>15.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(신설)</b></p> <p><b>16. 제1호 내지 제15호</b> 이외에 계약의 목적,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 할 때</p>	
<p>제17조(긴급시의 계약이행)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구매담당 처장의 승인을 얻어 미리 계약상대자를 예정하여</p>	<p>제17조(긴급시의 계약이행) ④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구매담당 처장의 승인을 얻어 미리 계약상대자를 예정하여 계약을</p>	<p>사족 삭제</p>

계약을 이행시킬 수 있다.	이행시킬 수 있다.	
3장 구매 방법 절차	3장 계약업무 절차	단순 문구 수정
제35조(입찰방법)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.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대학이 전자기술로써 제공하는 자동투찰기능(Proxy)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.	제35조(입찰방법)②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.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대학이 전자기술로써 제공하는 자동투찰기능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.	단순 문구 수정
제58조(소액구매제도) 소액구매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방법과 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구매요구자가 직접 구매하는 제도를 말한다.	제58조(소액구매제도) 소액구매는 <b>제59조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서 및 연구책임자가 직접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.</b>	소액구매의 주체 재정의
제59조(집행기준) <u>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액구매계약에 부칠 수가 있다. 다만, 이 소액구매는 구매발주부서(연구비의 경우 연구책임자)의 책임과 권한 하에 시행한다.</u> 1. 긴급 및 돌발상황 발생시 2. 단순제작품 3. 현지구매를 해야 할 때 4. <u>소액구매 제외품목 : 공사계약, 다량구매 집기비품, 단가 계약(단, 엔투비 E-catalog 품목, 시그마알드리치 시약류 등 MRO성 물품은 허용)</u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	제59조(집행기준) <b>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계약금액 건당 300만원 이하(외자의 경우 US\$3,000 이하)의 경우 소액구매 할 수 있다.</b> 1. 긴급 및 돌발상황 발생시 2. 단순제작품 3. 현지구매를 해야 할 때 <b>4. MRO성 물품</b> <b>5. 시설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공사</b>	- 제59조 및 제60조 중복사항 통합 - 기존의 집행기준이 모호하여 소액구매 가능한 경우 재정리 - 시설운영팀의 협조요청을 바탕으로 3백만원이하의 공사계약의 경우 리드타임을 줄이기 위해 시설운영팀의 검토받은 건에 대해서는 소액구매가 가능하도록 함.
제60조(소액구매금액의 한도) ① 제59조의 소액구매계약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구매한도 가. 내자 : 300만원 이하/ 건당 나. 외자 : US\$3,000 이하/ 건당 · 정산방법		정산방법은 계약규정에서 다루어야할 정도의 개념 아니므로 삭제 (업무메뉴얼 등에서 정산방법을 안내하고 있음.)

<p>가. 내자 : 세금계산서(또는 Credit Card 영수증) 등을 첨부하여 구매정산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추산 및 정산을 한다.</p> <p>나. 외자</p> <p>(1) <u>물품대금 및 부대비용 : 외화송금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전표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추산 및 정산을 한다.</u></p> <p>(2) <u>해당물품이 관세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통관 의뢰 하여야 하며, 수입신고서 원본을 관련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연구비(자산성 제외)에 한해 긴급 구매를 요하는 경우이거나 필요한 사유(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 효과 제고 등)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교수 및 독립채산기관장의 품의를 득하여 건당 1,000만원을 한도로 예외적으로 소액구매로 정산을 할 수 있다.</u></p>	<p>(삭제)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(자산성 제외)에 한해 긴급 구매를 요하는 경우이거나 필요한 사유(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 효과 제고 등)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교수 또는 독립채산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건당 1,000만원 이하는 소액구매 할 수 있다(외자의 경우 US\$10,000 이하).</u></p>	
<p>제61조(소액구매시 유의사항) ① 소액구매를 행할 때에는 본 대학 구매 문화 및 질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.</p> <p>② 부적절한 거래를 행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은 해당업체를 거래중지 시킬 수 있다.</p> <p>③ <u>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소액구매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.</u></p>	<p>제61조(소액구매시 유의사항) ① 소액구매를 행할 때에는 본 대학 구매 문화 및 질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자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.</p> <p>② 부적절한 거래를 행한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본 대학은 해당업체를 거래중지 시킬 수 있다.</p> <p>③ <b>(삭제)</b></p>	<p>계약규정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삭제: 별도 운영하지 않음</p>
<p>제67조(계약보증금, 하자보증금 및 지체상금면제) <u>외자구매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, 하자보증금 및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보증금지급 이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신용이 우수한 제작사 또는 설비공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</p> <p>2. 계약금액이 U\$30,000미만인 계약을 체결할 때</p> <p>3. 계약사가 계약전제조건으로 계약보증금, 하자보증금 및</p>	<p>제67조(계약보증금, 하자보증금 및 지체상금) ① 다음의 경우에는 <u>계약보증금, 하자보증금을 보증금지급 이행각서로</u> 대체할 수 있다.</p> <p>1. 신용이 우수한 제작사 또는 설비공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</p> <p>2. 계약금액이 U\$30,000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</p> <p>② <u>계약의 성립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계약보증금, 하자보증</u></p>	<p>- 각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와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1항과 2항으로 분리</p>

지체상금의 면제를 요구하는 때	금 및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.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</p>	